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9371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대도시권 광역교통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관리에 관한	2200108	김윤덕의원	'24.6.11.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4.11.26.)
투별법	2200100	등 10인	24.0.11.	소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일부개정법률인	-			심사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4.12.3.)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3.1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대도시권				6,0	국토교통위원회('24.11.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광역교통	2202202	권영진의원	,949.90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4.11.26.)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03392	등 10인	'24.8.30.	소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 무필급 일부개정법률인	-			심사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4.12.3.)
현무기/8 검포인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3.11.)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3. 13.)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및 제3조).
-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함(안 제7조의2).
- 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 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정을 통해 회계 처리하 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 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7부터 제7조의11까지 신설).
- 마.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를 추가하고

분과위원회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며,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심의 제척기준 완화 및 직무 대행규정 등을 보완함 (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5 및 제9조의6).

- 바. 도심지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 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을 감면함(안 제11조의2).
- 사.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광역교통위원회 및 국토교 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안 제13 조).

법률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도"를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도"를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 재대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2제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수립 시기 및 내용"을 "수립 시기, 내용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이 견조정"으로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다만, 각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6부터 제7조의11까지를 각각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7까지로

하고, 제7조의6부터 제7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의13(종전의 제7조의7)제1항 중 "제7조의8"을 "제7조의14"로 하고, 제7조의14(종전의 제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6"을 "제7조의12"로 한다.

-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는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 조 및제7조의10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속한 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또는 변경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도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5. 사업 시행기간
 - 6. 공사 목적 및 사유
 - 7.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 8. 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공고
- 2. 주민 의견청취
- 3.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④ 제3항제2호의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1. 위치 및 면적
- 2. 도로사업시행자
- 3. 사업의 종류

- 4.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 요 사항
- 5. 지형도면
- 6. 그 밖에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 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 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 및 이와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및 인가,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허가
-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 10.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15.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

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 정 해제

-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 는 신고
-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 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 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 20.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허가
-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 공하수도 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본법」 제24조제4 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를 준용한다.
-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② 도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사업 시행지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제5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보며, 도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불구하고 도로사업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사업 계획 승인"으로 본다.
- 제7조의11(준공검사)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도로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도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7조의 8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를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종전의 제4호의2) 중 "제7조의10"을 "제7조의16"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종전의 제4호의3) 중 "제7조의11"을 "제7조의17"으로 한다.

- 3의2.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이 견 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5.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에 광역교통"을 "광역교통"으로 한다.

2의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의5의 제목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으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역별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역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권역별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을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심의·의결한다"를 "심의·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의결하 기 위한 분과위원회
-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제9조의6의 제목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을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6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의·조정 및 의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제9조의6제7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⑨ 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광역교통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8호"로,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 6.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 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7.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제13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장"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 및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의 승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u>「지방자치</u>	1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을 말한다.	
<u><신 설></u>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
	<u>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u>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u><신 설></u>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
	<u>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u>
	<u>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u>
	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
	대도시"라 한다) 및 그 도
	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u>있는 지역</u>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	2
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u>특별시·광역</u>
시·특별자치시 및 도(이 하 "시·도"라 한다)에 걸 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는 도로(이하 "광역도로" 라 한다)

나. 둘 이상의 <u>시·도</u>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 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철도(「철 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 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 아. (생 략)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 도시권 내 둘 이상의 <u>시·도</u> 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

·
가 <u>특별시·광역시</u>
·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 및 도청소재대도시
나 <u>시·도 및 도</u>
청소재대도시
<u> </u>
다. ~ 아. (현행과 같음)
3
<u>시·도</u>
및 도청소재대도시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 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 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 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 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⑤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 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 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지 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 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한다. 다만, 각 당사자가 국토 교통부장관의 조정안을 수락하 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 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 의 장은 해당 조정 결과를 충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 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립 시기, 내용

른 이견조정-----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서 광역교통계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 계 처리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 행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광역 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는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광역교통계정 운 용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 행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충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계 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 조 및제7조의10에서 같다)의 신설,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

<신 설>

로 정하는 도로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속한 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또는 변경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 려는 도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사 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5. 사업 시행기간
- <u>6</u>. 공사 목적 및 사유
- <u>7.</u>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8. 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공고
- 2. 주민 의견청취
- 3.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④ 제3항제2호의 주민 의견청 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1. 위치 및 면적
- 2. 도로사업시행자
- 3. 사업의 종류
- 4.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 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 항
- 5. 지형도면
- 6. 그 밖에 도로사업 계획에 관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

 7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의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 인가・결정・신고・지정・협

<신 설>

- 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 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 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 · 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 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 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 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용허가
-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산의 용도폐지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중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

시·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허가, 같은법 제86조에 따른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법 제88조에 따른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법 제130조에 따른타인의토지에의 출입 허가

-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 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 용허가
-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청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

- 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 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 10.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제 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

<u>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u> <u>등의 허가</u>

- 15.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이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하가 및 토사채취신고
-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 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 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 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 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 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 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 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 20. 「연안관리법」 제25조에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

 가
-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허가
-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 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 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 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7 제1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 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이 「행정기본법」 제2 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 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 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의

<신 설>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 에 정착된 물건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② 도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사업 시행지에 인접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있다.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 에 정착된 물건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경우 제7조의7제5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u><신 설></u>

<신 설>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수 있다.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 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3호에 따 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도로를 설치 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 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 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 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사업 계획 승인"으로 본다.

제7조의11(준공검사) ① 도로사업

시행자는 도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 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준공검사서를 도로사업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도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 가 ·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 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7조의8에 따라 의제 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 검사 · 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 지정) (현행 제7조의6과 같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 제7조의12(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의 지정) (생략)

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경우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7. (생 략)
 - ② ~ ⑥ (생 략)
- <u>제7조의9(</u>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 원)(생 략)
- <u>제7조의10</u>(광역교통축 지정 등) (생 략)

흥)	
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 <u>제</u>
7조의14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14(광역교통특별다	내책의
수립·시행) ①	
제7조의12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다	내 책 의
재원) (현행 제7조의9와 전	_ , .
제7조이16(과연교토추 지저	[등)

(현행 제7조의10과 같음)

- <u>제7조의11</u>(환승편의성 검토) (생략)
-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 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광역교 통축의 지정·변경·해제 및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 4의3. 제7조의11에 따른 환승편 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 ③ ~ ⑤ (생 략)③ ~ ⑤ (현행과 같음)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의17(환승편의성 검토) (현
행 제7조의11과 같음)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광
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
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
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u>6.</u>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까
<u> </u>
<u>6의2.</u> 제7조의16
<u>6의3.</u> 제7조의17
<u>7</u> . ∼ <u>9</u> . (현행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및 다음 각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이 내로 구성한다.

1.·2. (생략) <u><신 설></u>

3. <u>그 밖에 광역교통</u>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 ⑤ (생 략)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대도 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 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3. <u>광역교통</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 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 별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

- ②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 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 위원은 권역별 위원회의 당연 직 위원이 된다.
- ③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의결한다.
- ⑤ 그 밖에 <u>권역별 위원회</u>의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u>권</u> 기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u>권역별 위원회</u>를 개최할

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u>분과위원회</u>
<u></u> 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
④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심의·조</u>
<u>정 및 의결할 수 있다</u> .
⑤분과위원회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분
과위원회 운영 등) ①
<u> </u>
-분과위원회
<u> </u>

수 있다.

-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u>권역별</u>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생 략)
-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u>권역별</u>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 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합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②
<u>원회</u>
<u>개의(開議)</u>
③ <u>분과위원회</u>
4
<u>분과위원</u>
<u>회</u>
⑤ (현행과 같음)
⑥
원회
<u>.</u>
1
<u>경우.</u> <u>다만, 제9조제1항</u>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
<u>인 심의·조정 및 의결에 지</u>

- 2. (생략)
-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 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 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 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 하여야 한다.
- ⑧ (생 략)

<u><신 설></u>

⑨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u>분과위원회</u>
⑦
원회
⑧ (현행과 같음)
⑨ 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
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
로 하위 직위에 있는 광역교통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
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u>10</u>
-분과위원회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생 ^전략)
 -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1. ~ 4.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5. (생 략)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저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현
Š	행과 같음)
	2
_	
_	<u> মা৪ই</u>
_	<u>제7호</u>
_	
_	
1	. ~ 4. (현행과 같음)
5	5.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의
	로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이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병
	사업
6	 5.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
	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7	 7.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
	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۶	<u> </u>
	.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u> -----<u>시·도</u>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광 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 ② (현행과 같음)